

대통령령 제17782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2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김명자
환경부장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을 오수처리 대책 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방류 수수질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을 오수처리 대책 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영 제2조의2)

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의 운영기구 설치 제외 대상을 종전에는 소유자가 2인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나 소유자가 30인 이하인 공

동주택으로 조정하여 운영기구 설치 대상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영 제7조의2)

다. 축산업자가 분뇨 등 처리 업자에게 축산 폐수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와 해양 오염 방지 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행양 배출 업자에게 신고 대상 축산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5조 제3호 및 제4호 신설)

라. 오수 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방류 수수질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대상 범위 및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영 별표 8)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8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자원부령 제184호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11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중개정령

※ 개정이유 ※

에너지 효율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균 효율 관리 기자재에 대하여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2002. 3. 25, 법률 제6671호)됨에 따라 동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이 필요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정하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등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연도별 생산실적 등으로 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기자재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확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제23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제8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9조의3제1항관련)

$$\text{평균에너지소비효율} = \frac{\text{기자재 판매량}}{\sum \left[\frac{\text{기자재의 종류별 국내판매량}}{\text{기자재의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 \right]}$$

비고 : 기자재의 종류별 국내판매량 및 기자재의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 및 별지서식은 연합회로 문의.

환경부고시제2002-175호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 1997-79호, 1997. 8. 29)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증개정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관련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호중 “규정 제8조에”를 “규정 제9조에”로 한다.

제10조2증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신규화학물질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화학물질목록에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
제14조 제1항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중 “⑦자료보호해
제예정일”을 “⑦자료보호 만료예정일”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하
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
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자료보호의 해지) ①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
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②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사전에 자료보
호 해지사실, 해지 사유 및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
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
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
야 한다.

제16조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확인) ①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처하고자 하는 화학
물질이 자료보호가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기
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총칭명(화학물질명, CAS번호, 구
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자료는 밀봉하여 별도로 제
출)

2. 비교할 총칭명 및 일련번호(최대 10개이내)

②보호기관의 장은 확인요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하
여 자료보호가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보호자료관
리대장)신청인의 “해제예정일자”란을 “만료예정일자”
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2조 중 “보호기간이 도달하거나 해제된”을 “보호기
간이 만료하거나 해지된”으로 하고 동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3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2-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
곡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어곡지방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승인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0,000m³/일(5,000m³/일×2기)

○ 설치면적 : 11,785.3m²

3. 예상사업기간 : 1997년 7월 ~ 2002년 12월

4. 사업지역 : 경남 양산시 양산읍 어곡동 67번지 어곡
지방산업단지내

5. 분야별 예상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6,409백만원

○ 유지관리비 : 2,455백만원/년

6. 예상인원자의 범위 :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발생 오·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입주업체

7.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50%), 민자(5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부담

8.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는 국고보조금 50% 및 삼성물산(주) 50% 부담

○ 유지관리비는 원인자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오·폐수발생량 및 오염물질 항목별 부하량을 기준으로 배분

9.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대한 관계서류등은 양산시 도시과(055-380-4604), 삼성물산(주)건설부문 부산사업소(051-636-0981) 및 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72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면적 : 1,269,608.6m²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양산시 도시과(055-380-4604), 삼성물산(주)건설부문 부산사업소(051-636-0981) 및 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72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대구지방환경고시제2002-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월항석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환경부고시 제1996-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고시제2002-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지정

1. 공동처리구역

- 구분 :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양산시 양신읍 어곡동 일원 어곡지방산업단지

월항석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및환경오염방지사업폐쇄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나.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750톤/일

- 설치면적 : 600m²(공동처리구역 면적 : 79,166m²)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996

- 사업지역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일원

라. 분야별 소요 사업비

- 시설설치비 : 530백만원

마. 원인자의 범위 : 월상석재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업체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

- 전액 원인자 부담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청 환경보호과
(T.054-930-6189)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환경부고시 제1996-26호(1996. 2. 24)는 폐지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2-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월항석재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환경부고시 제1996-25호)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월항석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폐지

1. 공동처리구역

- 구분 : 월항석재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일원
 - 면적 : 79,166m²
 - 비고 : 공동처리구역 해제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환경부고시 제1996-25호(1996. 2. 24)는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2-186호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서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1. 사업목적 : 춘천시 서면(현암, 금산, 신매, 방동리) 일원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인가내용

-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춘천시장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11
-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405-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9,999m²
-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칭 : 서면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 1,900m³/일
- 처리방법 : 질소 · 인 제거 고도처리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 9,174ha
- 예정처리구역 : 357.6ha

마. 사업시행기간 : 2003년 ~ 200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불임”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춘천시 하수과(033-250-3536)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토지편입조서는 연합회로 문의]

환경부고시제2002-187호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고시개정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장, 1. 응집제, 1.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성분
규격> 중 “산화알루미늄 10.0 ~ 18.0%를 “산화알루미
늄 1종 10.0 ~ 12.0%, 2종 12.0 ~ 15.0%, 3종 15.0 ~
18.0%”로 한다.

별표 1, 제2장, 1. 응집제, 9.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
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Poly Aluminum
Hydroxy Chloro Sulfate, Al13(OH) 28C19SO4)

가. 성분규격

(1) 성상

: 이 품목은 무색 내지는 짙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이
다.

(2) 확인시험

: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3) 규격기준

비중(20)	1.20이상
pH	3.5 ~ 5.5
산화알루미늄(Al2O3)	10.0 ~ 13.0%
표시량의	90~110%
염기도	70%이상
황산이온(SO42-)	1.3 ~ 3.0%
염화물(Chloride)	9.0 ~ 14.0%
암모니아성질소 (NH3-N)	0.01%이하
철(Fe)	0.01%이하
비소(As)	5ppm이하
납(Pb)	10ppm이하
카드뮴(Cd)	2ppm이하
크롬(Cr)	10ppm이하
망간(Mn)	25ppm이하
수은(Hg)	0.2ppm이하

나. 시험방법

(1) 확인시험

이 품목은 확인 시험방법 중 알루미늄염, 황산염 및 염
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비중

이 품목을 20에서 비중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pH

이 품목의 1% 수용액을 20에서 유리전극법으로 측정
한다.

(4) 산화알루미늄

폴리염화알루미늄의 (4)산화알루미늄에 따라서 시험
한다.

(5) 염기도

폴리염화알루미늄의 (5)염기도에 따라서 시험한다.

(6) 황산이온

폴리염화알루미늄의 (6)황산이온에 따라서 시험한다.

(7) 염화물(Chloride)

이 품목 약 2.0 ~ 3.0g을 정밀히 달아 물을 넣어 250ml로 한 다음 이액 20ml를 정확히 취하여 물을 넣어 100ml로 한다. 이때 시료가 진한 색깔을 나타내면 Al(OH)3 혼탁액 3ml를 넣어 혼합한 다음 정치시킨 후 여과한다. 이 시험액에 1N NaOH 용액 약 0.4ml를 넣어 pH를 7~10으로 조정한 다음 K₂CrO₄ 지시용액 1ml를 가하고 0.1N AgNO₃ 용액으로 적정한다. 종말점은 액의 색이 짙은 주홍색으로 변하는 점으로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시료중의염화물(%)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염화물(%)} = \frac{(a - a') \times N \times 35.45}{S \times 1,000 \times \frac{20}{250}} \times 100$$

S : 시료량(g)

a : 시료용액에서 소비한 0.1N-질산은 용액의 양(ml)

a' : 공시험에서 소비된 0.1N-질산은 용액의 양(ml)

N : 0.1N - 질산은 규정농도

(8) 암모니아성질소

폴리염화알루미늄의 (7)암모니아성 질소에 따라서 시험한다.

(9) 철

폴리염화알루미늄의 (8)철에 따라서 시험한다.

(10) 비소

폴리염화알루미늄의 (9)비소에 따라서 시험한다.

(11) 납, 카드뮴

폴리염화알루미늄의 (10)납, 카드뮴에 따라서 시험한다.

(12) 크롬

폴리염화알루미늄의 (11) 크롬에 따라서 시험한다.

(13) 망간

폴리염화알루미늄의 (12) 망간에 따라서 시험한다.

(14) 수은

폴리염화알루미늄의 (13) 수은에 따라서 시험한다.

별표1. 제2장, II. 살균·소독제, 3.차아염소산나트륨의 <성분규격> 중 “물불용물 0.01%이하”와 <시험방법> 중 “(4)물불용물 이 품목 100g을 정밀히 달아 300ml의 비이커에 넣고 물 약 50ml를 넣어 잘 교반한 다음 이 액을 10% 수산화나트륨시액 20ml로 여과시키고 물로 충분히 씻어준 다음 100 ~ 105°에서 2 ~ 3단 도가 니형 유리여과기(1G4)에 여과하고 비이커를 물로 잘 씻은 세액도합하여 여과한다. 유리여과기를 100 ~ 105°에서 2 ~ 3시간 전조시킨 다음 데시케이타안에서 식혀 칭량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장, III. 방청제의 <성분규격> 중 정인산염의 1종2호, 2종2호, 3종2호의 “황색의 침전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측정치에 회석배율을 곱할 때”를 각각 “황색의 침전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바소, 납, 카드뮴, 수은의 1종2호에 규정한 “2ppm, 15ppm, 2ppm, 0.2ppm”을 각각 “고형으로 환산하여 1종1호에 비례한 값”으로 하고, 비소, 납, 카드뮴, 수은의 2종2호에 규정한 “2ppm, 15ppm, 2ppm, 0.2ppm”을 각각 “고형으로 환산하여 2종1호에 비례한 값”으로 하며, 비소, 납, 카드뮴, 수은의 3종2호에 규정한 “2ppm, 15ppm, 2ppm, 0.2ppm”을 각각 “고형으로 환산하여 3종1호에 비례한 값”으로 한다.

별표 1, 제2장, IV. 기타제제, 4. 수산화나트륨의 <성분규격> 중 “수산화나트륨 45%이상”을 “수산화나트륨 1종: 5%이상, 2종: 45%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2-4호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72

번지 일원

- 면적 : 78,060m²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들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2-5호

파주금파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파주금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90m³/일

- 설치면적 : -1,100m²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2년 ~ 2003년

- 사업지역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72

번지 일원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399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76,184천원/년

마. 예상원인자 범위

-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국고 50%(699.5백만원), 원인자부담 50%(699.5백만원)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파주시 도시과(031-940-4721)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환경부령 제13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사항이 영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제3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의 변경(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본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9조중 “축산폐수의 양 및 오염물질의 종류·농도등”을 “축산폐수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 등”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본문중 “영 제33조”를 “영 제32조

의3”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의 제1호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비고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대장균 군수 (개수/mg)	기타 (mg/l)
분뇨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 인 : 8 이하
축산폐수공 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 인 : 8 이하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지역 항목	구분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50 이하	150 이하
특정지역	부유물질량 (mg/l)	50 이하	150 이하
	총질소 (mg/l)	260 이하	-
	총인 (mg/l)	50 이하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50 이하	350 이하
기타지역	부유물질량 (mg/l)	150 이하	350 이하

비고 :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500\text{mg/l}$ 이하로 한다.

가. 농지 사육시설 : 면적 50m^2 이상 140m^2 미만

나. 소(젖소를 제외한다)사육시설

: 면적 100m^2 이상 200m^2 미만

다. 젖소 사육시설

: 축사면적 100m^2 이상 200m^2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m^2 이상 600m^2 미만

마. 닭·오리·양 사육시설

: 면적 150m^2 이상 500m^2 미만

바. 사슴 사육시설 : 면적 500m^2 이상

3. 기타지역이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의 제13호 본문중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를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로 하고, 동호가 목중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를 “상·하부, 측면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부, 측면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구조물이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부, 측면의 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6의 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의 바목중 “아니된다”를 “아니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아. 퇴비화방법에 의한 시설에서 반입되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1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된 축산폐수를 6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축산폐수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축산폐수를 6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축산폐수를 1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별표 10의 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1의 1.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자격기준란중 “수질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토목기사 또는 화공기사(화공·공업화학분야)”를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로 하고, 동표의 2. 오수처리설 및 단독정화조의 자격기준란중 “수질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토목기사 또는 화공기사(화공·공업화학분야)”를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변구역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 중인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유수수질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변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날부터 3년까지는 당해 수변구역이 특정지역이었던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기타지역이었던 경우에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활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저장애비화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재활용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서식]은 연합회로 문의



**올해는 환경인회관건립기금 모금운동,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수질·대기신기술 세미나 등
환경기술인을 위해 신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